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예비타당성조사, 산업단지 및 지역특화산업 지정 특례〉

■ 장동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598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인구감소지역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2
2.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및 지역특화산업 지정 특례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장동혁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14.
3. 회부연월일 : 2024. 11.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이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주거·교통 기반을 확충하는 경우에 일반 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제한되고 있음. 또한 인구소멸 지역 내 산업단지 활성화와 특화산업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조사방법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한 지역 특화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인구감소지역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개정안은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거·교통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조사수행기관, 조사방법 등에 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4조의2(「국가재정법」에 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주거·교통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비타당성조사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적으로 검증·평가하는 제도로써,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함.¹⁾

구체적으로는 ① 경제성(수요·편익·비용 추정 등), ② 정책성(사업추진 여건, 정책효과 등), ③ 지역균형발전(지역 낙후도,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등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층화분석법(AHP)을 활용하여 종합평가를 도출함.²⁾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주거·교통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조사수행기

1)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재정부 훈령)

제6조(기본 수행절차) ①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기본적인 수행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한 사업의 쟁점 파악
2. 경제성 분석 : 수요·편익·비용 추정 등
3. 정책성 분석 :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추진 여건, 정책 효과, 별도평가항목(선택) 등
4. 지역균형발전 분석 : 지역낙후도,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다만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 기술성 분석으로 대체 가능)
5. 종합평가 :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층화분석법(이하 "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라 한다)을 활용하여 도출한 결과 등
6. 정책제언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논의 내용을 포함한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등

관, 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대규모의 주거·교통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함.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요]

구 분	내 용	근 거
대상사업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조사수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등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6조제1항
조사방법 및 절차	① 사업 쟁점 파악 (사업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②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 균형발전 분석 ③ 종합평가 ④ 정책제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6조제1항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상 인구나 통행량을 기반으로 하는 주거나 도로·철도사업의 경우 수요 추정이 낮게 나와 경제성(B/C) 분석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³⁾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균 조사기간은 16.7개월로서 시·군·구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포함

3)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재정부 훈령)

제47조(비용-편익 분석) 수행기관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때 편익/비용 비율(Benefit Cost Ratio: B/C Ratio),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등의 지표를 구하여야 하며 각 지표가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B/C 비율)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편익/비용 비율이 1.0이상($B/C \geq 1.0$)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순현재가치)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연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제한값이며 순현재가치가 0이상($NPV \geq 0$)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3. (내부수익률)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로 환산된 값이 같아지는 할인율 R을 구하는 방법으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된 인구감소지역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경제성 분석 등 조사방법·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인구감소지역은 229개⁵⁾ 지방자치단체 중 89개(38.9%)에 해당하여 정책이 적용되는 지역의 수가 많고, 예비타당성조사의 요건 등이 완화되는 경우 다수의 지역에서 경제성이 낮은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으므로⁶⁾, 무리한 사업 추진은 인구감소지역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규정하는 국가재정법령과의 법 체계

4)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 평균 조사기간

(단위: 건, 개월)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조사완료 사업수	18	34	13	28	10	20.6
조사기간	14.1	19.3	16.2	16.3	14.3	16.7

※ 자료: 기획재정부, 2024. 8.

(기획재정부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200829) 검토보고서 참고)

5) 기초자치단체 226개, 세종특별자치시 1개, 제주특별자치도 내 행정시 2개

6) 안태훈,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24.

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령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면제요건, 선정기준, 조사수행기관, 조사방법 및 절차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법률에서 이를 달리 정하는 것은 대규모 사업의 무분별한 수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나 비효율을 방지하고자 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주거·교통기반 확충이라는 불특정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의 요건을 달리 정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통일성을 저해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형해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며,⁷⁾

참고로, 기존 입법례는 특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우선선정, 신속 추진 및 단축처리 등을 규정한 사례가 있음.

7) 참고로, 기존 예비타당성조사가 경제성 분석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자, 2014년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2019년 비수도권 건설사업의 AHP 종합점수 산출시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가중치를 기존 25~35%에서 30~40%로 확대하는 등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음.

<예시 :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3.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5조(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사업(규제자유특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한정한다) 중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토지 이용 및 지역특화산업 지정 특례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구획 등 지정에 관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이를 정하도록 하고(안 제28조의2 신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지역특화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8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의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 지정에 관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그 요건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제28조의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현행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 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인구감소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단지 토지 이용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조제1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구획 등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 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토계획법」은 용도지역(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경관지구, 개발진흥지구, 복합용도지구, 방화지구 등),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을 정하고 있으며, 각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 행위제한, 행위허가의 기준 등을 정하고 있음.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역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주거지역: 주거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흥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에 대한 지역, 지구, 구역, 구획 등 지정에 관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 이용 규제를 대통령령으로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국토계획법」에 대한 특례’를 두면서도 「국토계획법」상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특례를 두고자 하는지 명시하지 않고 있어, 건폐율, 행위제한, 건축허용기준 등 특례의 내용과 그 요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¹⁰⁾

또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특례(건축허용기준 완화, 건폐율 최대한도 상향, 행위제한 완화 등)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나 부처 이견이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의 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0) 다른 법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경우, 법률명 뿐만이 아니라 해당 법률의 구체적인 조항을 함께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

법목적 및 제도운영 자체를 형해화할 수 있는 과도한 특례이고, 유사 입법례도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입장임.

<예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②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제한 등에 관한 특례는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포함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② 제주자치도에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시설(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 및 관광객의 관광·휴양을 위하여 설치하는 편의시설·관광시설을 포함한다)의 결정·구조·설치의 기준 및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관광숙박시설인 경우에는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지역특화산업 지정 특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 균형발전법」”) 제14조는 시·도지사는 ①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②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③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개정안은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인구감소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특화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 하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역특화산업을 지정¹¹⁾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일반적으로 특례 규정은 기존의 법체계와 질서에 대한 예외적인 내용을 규정

1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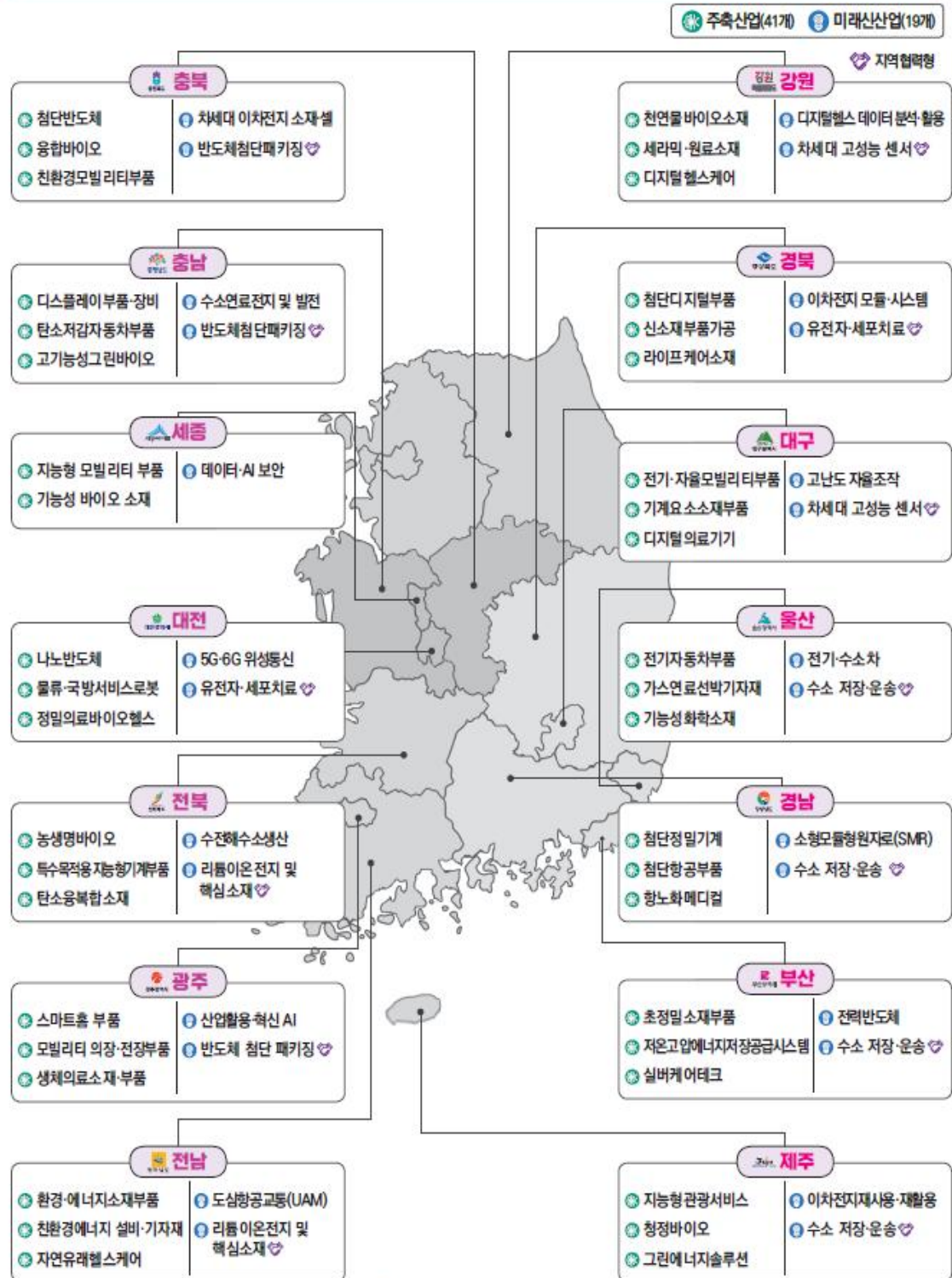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하는 것이므로,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나 부처 이견이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50

지역주력산업 (주축산업 + 미래 신산업)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